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No. 2020-					
소관부서	시행년도	행정상 조치	재 정 상 조 치		신분상 조치
			조치방법	금액(천원)	
○○○○○○단 (○○○○○○○○)	2020년	부서주의 및 감리단주의	-	-	-

【제 목】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

□ 업무내용

「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주차장(이하 “○○주차장” 이라 한다) 건축공사」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○○○○○단 ○○○○○부(이하 “○○○○○○부” 라 한다)와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¹⁾하는 (주)건축사사무소 ○○엔지니어링 컨소시엄(이하 “○○” 이라 한다)은 ○○주차장 토공사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토사 운반하기 위해 이용하는 덤프트럭을 임차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²⁾와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였는지³⁾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.

□ 관련법령

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,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여 건설기계, 임대료 지급의 시기·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(이하 “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” 라 한다)를 작성하고, 공공기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.

따라서 ○○○○○부와 ○○은 덤프트럭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체불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인이 토사운반 계약을 체결할 때 덤프트럭 대여 관련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- 1) ○○은 2017.○.○. 「○○○ ○○○ 및 ○○○○○○ ○○주차장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」 계약을 체결하고, 公社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 하였으며, 2019.○.○. ○○건설(주) 컨소시엄(이하“○○건설”)은 「○○○○○○○ ○○주차장(○○○-○블럭) 건축공사」 를 계약체결하고 2020.○.○. 공사를 착공함
- 2)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(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)에 대해 월 1회 이상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
- 3) 공공기관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68조의3 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□ 확인된 문제

그러나 2020. ○. ○. ~ 2020. ○. ○. ○○주차장 토공사 관련 덤프트럭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한 결과 토사반출시 이용된 덤프트럭 총 ○○○대 중 ○○○대는 덤프트럭 등록번호가 기재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토공사 물량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일일공사일보, 일일토사반출확인서, 사토반출대장, 반출증만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.

□ 관련자 의견

○○○○○○부에서는 2020. ○. ○.과 2020. ○. ○. 두 차례에 걸쳐 “건설기계·장비 임대차계약관련 관리감독 철저 요청” 공문을 ○○에 시행하였고, ○○은 2020. ○. ○.과 2020. ○. ○. 업무지시서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사용계약 체결 및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지하주차장 건축공사 시공사인 ○○건설(주)(이하 “○○건설” 이라한다)에 지시 하였으며, ○○건설도 2020. ○. ○.과 2020. ○. ○.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주체인 ○○주차장 건축공사 하도급 업체인 ○○건설(주)(이하 “○○건설” 이라 한다)에 “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요청” 공문을 시행하는 등 ○○건설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를 했다고 한다.

그러나 결과적으로 덤프트럭 ○○○대 중 ○○○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되고 ○○○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부 “주의” 조치

사업 총괄업무를 소홀히 한 ○○○○○부에 대해 “주의” 조치하오니 향후 관련법령 및 公社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 총괄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건설사업관리단 (주)○○ “주의” 조치

또한 현장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단 (주)○○에 대해 公社 관련규정에 따라 “주의” 조치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